

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

의 안 번 호	298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6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시행(99. 9. 7)과 관련하여 종전의 “산림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가 폐지됨에 따라
-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임산물 및 임업종자시험·감정 등의 민원을 처리할 규정이 없으므로
- 본 민원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제명의 조례로 제정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임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임업시험·분석·감정 등의 업무중 임업용 종자, 묘목의 시험 및 감정과 토양분석·산림토양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
-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 (안 제1조)
-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신청 절차를 정함 (안 제2조)
-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서 검토결과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3조)

-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 위탁자에게 통지도록 함(안 제5조)
-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통합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함(안 제8조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임업시험 및 감정등에 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에 의뢰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험 및 감정위탁 등) ① 연구소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는 이 조례 시행규칙(이하 ‘규칙’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.

제3조(수탁의 거부) ①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서의 검토결과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 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구 등의 제공) 연구소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에 시설기계, 기구, 세료, 노루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시험성적서) ① 연구소장은 임업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

규칙에서 정하는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성적서 교부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뢰인 이외의 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광고의 기재 등) ①시험성적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당해 성적사항을 광고·게시하거나 인쇄물, 용기,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.
②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·게시, 기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공시종자의 봉함) ①연구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봉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봉함 해 주어야 한다.

②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2조 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 험·분석·조사·감정수수료에 의해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수료의 면제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 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험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

시험	시험등의 구분	시험내용 또는 공시품명	수량 또는 조사범위
1	임업용종자감정	1. 대립종자(잣보다 큰종자) <input type="radio"/> 용적중 <input type="radio"/> 순량율 <input type="radio"/> 실중 <input type="radio"/> 수분 <input type="radio"/> 발아율	1,200g 1,200g 400g 15g 150립
		2. 중립종자(잣과 같은 크기의 종자) <input type="radio"/> 용적중 <input type="radio"/> 순량율 <input type="radio"/> 실중 <input type="radio"/> 수분 <input type="radio"/> 발아율	400g 400g 2,000g 15g 1,250립
		3. 소립종자(잣보다 작은종자) <input type="radio"/> 용적중 <input type="radio"/> 순량율 <input type="radio"/> 실중 <input type="radio"/> 수분 <input type="radio"/> 발아율	200g 200g 4,000g 10g 500립
		4. 세립종자(자작종자 크기보다 작은종자) <input type="radio"/> 용적중 <input type="radio"/> 순량율 <input type="radio"/> 실중 <input type="radio"/> 수분 <input type="radio"/> 발아율(항온기 발아)	40g 40g 4,000g 10g 500립
2	묘목감정		

시험	시험등의 구분	시험내용 또는 공시품명	수량 또는 조사범위
3	토양분석	1.토양물리분석 ○ 입도분석 ○ 진비증 ○ 석력함양 2.토양화 분석 ○ 산도(PH) ○ 전질소 ○ 유효인산 유기물 ○ 양이온 치환용량 ○ 치환성 염기류 ○ 미량원소류	토양시료 1kg 토양시료 1kg
4	산림토양조사	정밀산림토양 조사	현지조사

관계법령발췌

산림법

제47조(종·묘의 검사 등) 시·도지사는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·묘 생산업자, 마을 또는 학교가 생산하는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조합,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결과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·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산림법시행령

제46조(종·묘검사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·묘의 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종·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<개정 99. 8. 6>
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·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게 종·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99. 8. 6>

- 1.검사대상 종·묘가 과다하여 관계공무원만으로 적기검사가 곤란한 경우

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 (농림부령 제1310호)

제2조(시험등의 구분 등) ①임업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·분석·조사·감정(이하 “시험”이라 한다), 임목종자의 저장 및 기술지도(이하 “시험등”이라 한다)의 구분과 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
② 임업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의뢰 받은 시험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시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시설·기계·기구 또는 재료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(시험의 의뢰) ①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시험의뢰서에 대상물품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물품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의뢰인은 현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뢰인은 소정의 수수료 외에 현지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시험의뢰를 받아 시험한 임목종자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봉함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봉함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험결과의 통지 등) ① 원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업시험성적서(이하 “성적서”라 한다)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외에 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험성적서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뢰인 외의 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 등) ① 제3조제1항,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의뢰, 시험성적서의 교부신청 또는 임목종자의 저장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, 임목종자의 저장 또는 기술지도를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